

## 횡령·편취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제2호에 따라 횡령 또는 편취당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 하고자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예고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 예고기간 내에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취하지 않거나,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가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06.08.(월) ~ 2026.06.22.(월) 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송달 대상자		자동차 소유자		말소예정일	관할경찰서
	성 명	주 소	성 명	사용본거지		
34주2897	강**	부산시 북구	우***** <small>(주)</small>	부산광역시 동구	2026.06.24. 이후	광주북부경찰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6. 08.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